

보도 일시	(인터넷) 2022.12.16.(금) 11:00 (지 면) 2022.12.16.(금) 11:00	배포 일시	2022.12.16.(금) 8:30
담당부서 <대학규제 개혁협의회> <진단제도 개선협의회>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7)
		담당자	서기관 김민선 (044-203-6809) 사무관 전주현 (044-203-6614)
담당부서 <4대요건>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912)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3-6932)

대학의 자율적인 운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본격화

-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등 논의 -

주요 내용

- [대학규제개혁협의회(12.14.)]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및 2024학년도 정원조정 기준 개선
-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및 새로운 평가체제 구축 방안 협의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12.14.)’와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12.15.)’를 연달아 개최하여,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개혁 및 평가체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연내 이를 확정하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에서는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과 ‘20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을 논의하였다.

대학의 역동적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 4대 요건 전면 개편

- ‘4대 요건’은 「대학설립·운영규정」에서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으로, 대학설립 이후에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중요한 대학 운영에도 해당 기준들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다.
 - 그러나, 「대학설립·운영규정(1996년 제정)」 제정 이전부터 설립·운영되던 대학들도 있고, 전통적인 교육방식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요건이 현재 변화한 교육·연구 활동과는 어울리지 않거나, 오히려 자유롭고 혁신적인 교육활동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 특히, 이미 설립된 대학들이 온라인수업의 확대, 지자체·기업·대학 협력, 대학 간 공동 교육·연구 활동 활성화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자율적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는 4대 요건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 이번 교육부의 개편안은 이미 설립된 대학에 대하여 자유로운 교육·연구 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학생 수 급감 상황에서 유휴 재산을 활용해 어려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운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었다.
- 대학 시설·건물(교사)의 경우, 원격수업 및 대학 간 자원공유 등의 추세에 맞춰 기존 인문사회(현행 기준 면적 12㎡)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공학·예체능 계열의 기준 면적은 타 국가 사례 및 최소주거면적(14㎡, 국토부 공고) 기준 등을 참고하여 14㎡ 수준으로 조정하고자 한다.
 - 또한, 기존에 시설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이 추가로 교육·연구 시설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건물을 임차하여 활용할 수도 있도록 개선한다.

- 특히, 토지(교지)의 경우는 설립 시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라 건축관계법령 및 관할 지역 조례상의 **건폐율·용적률에 따라 건물면적에 필요한 토지만 확보하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 교원의 경우에는 운영 중인 대학들도 설립 시의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되, 다양한 강좌 개설 수요 및 현장 전문인력 활용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일반대학의 **겸임·초빙교원 활용 가능 비율을 현재 1/5 이내에서 1/3 이내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
 - ※ (현행 기준)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 1/3, 산업대·전문대 1/2, 일반대 1/5
- 수익용기본재산의 경우, 당초 규정의 취지를 살려 **학교법인이 충분히 수익을 창출하여 대학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실질적으로 수익창출 및 대학재정 기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할 계획이다.
 - ※ 현재 국가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은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의 2.8% 이상을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 확보를 면제(대학설립·운영규정 제7조)
- 아울러, 종전에는 기존 캠퍼스의 교사·교지 확보율이 100% 이상인 경우에만 대학이 일부 학과를 새로운 캠퍼스로 이전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새롭게 조성되는 캠퍼스의 시설여건만 갖추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
- 또한, 대학-전문대학, 대학-산업대학 등이 통합하는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한 종전의 조건을 삭제하여, 학령인구 감소추세에 맞춰 대학 간 통폐합을 촉진해 나간다.
- 교육부는 그간 정책연구, 관련 포럼, 현장 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한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에 대해 제3차 대학 규제 개혁 협의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이달 말 입법예고를 통해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할 예정이다.

대학별 자율적인 특성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 대폭 자율화

- 교육부는 대학이 학령인구 감소 등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여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추진하고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2024학년도 학생정원 조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첫째, 종전에는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부)를 신설·통합·폐지하거나 학과 간의 정원을 단순 조정하려는 경우에도 대학 전체 교원 확보율을 전년도 이상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탄력적인 구조개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온 것을 고려하여,
 - 대학이 환경변화에 맞춰 좀 더 유연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2024학년도부터는 교원확보율 요건을 완전 폐지하여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완전히 자율적으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둘째, 앞으로 지방대학에는 결손인원이나 편입학여석을 활용하여 분야에 관계없이 새로운 학과를 신설할 수 있는 특례가 주어진다.
 - 현재는 첨단분야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였으나, 지방대는 학생모집난을 고려하여 첨단분야를 포함한 전 분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 셋째, 아울러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을 100% 충족하는 경우에만 대학의 정원 순증이 가능했으나, 국가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첨단기술 분야에 대하여는 교원확보율 기준만 충족해도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 끝으로, 대학이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자 할 때 요구하던 교원확보율 및 교사시설 등 확보 기준이 완화되며,
 - 대학원에 박사과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 요구하던 교원의 연구실적 기준을 앞으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이번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20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다.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 협의회

-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전국 대학의 기본적 교육역량을 진단하여 일반재정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평가로서, 2015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해 왔으나,
 - * 특수목적 달성(산학협력, 평생교육 등)을 요구하지 않고, 대학의 전체적인 교육·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대학 규모와 연계해 지원하는 사업(사업명 : ‘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하고,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가 대학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 비판이 지속 제기되었다.
- 이에 교육부는 12월 15일(목)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탈피한 새로운 평가체제시안을 확정하였다.
 - * (전문)대교협, 대학 현장 전문가(권역 균형 고려) 및 국회 추천(여·야 각 2인) 전문가로 구성(2021.9.~)
- 협의회에서는 종전의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021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에서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개편방안이 협의되었으며,
 - * 인증유예, 인증(효력)정지, 불인증(인증취소 포함)대학 및 기관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 교육부는 이번 협의안을 바탕으로 개편방안(시안)을 수립한 후, 연내에 대학 현장에 안내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 ※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확정된 ‘확정안’을 2023년 초 발표 예정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대학설립·운영규정」 전면 개정안과 ‘대학 평가체제 개편방안(시안)’은 교육부 대학 규제개혁의 첫 신호탄이다.”라며,
 - “앞으로 교육부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통해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처한 우리 대학이 스스로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한편, “회계부정, 지표조작 등 중대한 비위가 발견된 대학에 대해서는 엄정 처분하고 고발·수사의뢰를 통해 사법적 조치가 취해지도록 할 것이며, 대학재정지원사업의 협약해지, 지원중단, 사업비 수혜제한 및 국가장학금 지원 제한 등의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여 대학의 자율성 확대와 함께 대학의 책무성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제3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요
 2. 제9차 대학 기본역량진단 제도개선 협의회 개요
 3. 교육부의 대학 평가 정책 추진 연혁
 4.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주요 개편 내용
 5. 24학년도 정원 조정 계획 개편 내용
 6. (전문)대교협 기관평가인증 및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설명자료

담당 부서 <진단제도> <정원 조정>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책임자	과 장	박준성 (044-203-6917)
		담당자	서기관	김민선 (044-203-6809)
			사무관	전주현 (044-203-6614)
			사무관	조진행 (044-203-6921)
담당부서 <4대요건 개편, 경영위기대학>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유희승 (044-203-6912)
		담당자	사무관	조성원 (044-203-6932)
담당부서 <대학원 정원>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3-6249)
		담당자	서기관	이운식 (044-203-6255)



□ **개 요**

- 일시 : '22. 12. 14. (수) 15:30 ~ 17:00
- 장소 : 서울역 인근 회의실
- 참석 :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교육부 등 22명 내외
 - (협의회)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위원장 및 민간위원 17명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당연직 위원), 고등교육정책과장, 사립대학정책과장, 대학학사제도과장 등
- 안건 :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개편 방안(안), '24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안) 등

□ **세부 일정(안)**

시 각		일 정	진 행
15:30~15:35	'5	▪ 회의 안내 및 개회	고등교육정책과장
15:35~15:40	'5	▪ 인사 말씀	위원장
15:40~16:55	'75	▪ 제3차 회의안건 논의	위원장, 위원 전체
16:55~17:00	'5	▪ 마무리 말씀 및 회의 종료	위원장

붙임 2**제9차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제도개선 협의회 개요****□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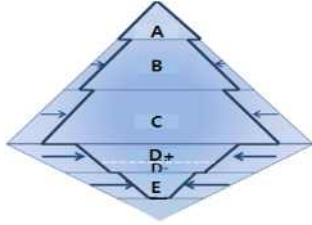
- 일 시 : '22. 12. 15.(목), 15:30~16:30
- 장 소 : 서울역 인근 회의실
- 참석자 : 진단제도 개선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 고등교육정책실장, 고등교육정책관, 교육부·KEDI 업무담당자 등
- 논의주제 :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개편 방안 관련 토론

□ 세부일정(안)

※ 사회 :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장

시 각		일 정	진 행
15:30~15:32	'2	▪ 회의 안내 및 개회	고등교육정책과장
15:32~15:35	'3	▪ 위원장님 인사말씀	
15:35~15:50	'15	▪ 안건 보고	고등교육정책과장
15:50~16:25	'35	▪ 자유토론	위원장
16:25~16:30	'5	▪ 마무리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 (내용) 모든 대학을 A~E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 외 모든 대학(약 84%) 정원 감축 권고
- (비판) ①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한 양적 구조조정 중심
②전국 대학을 A~E 등급으로 구분하여 서열화 논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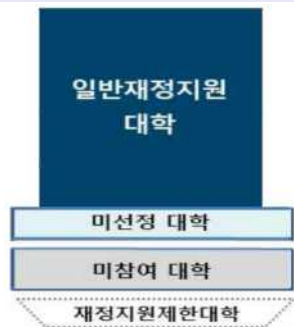


- (내용) 자율개선,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으로 구분하여 자율개선대학(64%)은 일반재정 지원, 역량강화대학 및 제한대학(총 36%) 정원감축 권고
- (비판) ①대학의 선택권을 주지 않는 강제적 평가 실시, ②한 번의 평가로 일반재정지원 선정과 재정지원제한이 모두 결정되어 대학의 평가부담이 과도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 현재 진행 중인 '22~'24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적용 중



- (내용) ①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정량지표만으로 별도 실시하고 대학에 진단 참여 선택권을 부여, ②권역별 선정 비중 확대로 지역 배려 강화
- (비판) ①대학별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 ②기관평가인증과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별개로 실시하여 대학의 평가부담 과도



2025년 이후 : 새로운 평가 체제로 재편

※ '25년 이후의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에 적용



- ▶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대학의 자율적 발전 지원
-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과,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미인증대학*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 지원
- * 인증유예 / 인증정지 / 불인증(인증취소 포함)대학 및 기관평가인증을 미신청한 대학

붙임 4

대학 설립·운영 4대 요건 주요 개편 내용(안)

◆ 설립 기준(현행 유지)과 운영 기준을 분리하고, 학과·정원의 증설·증원(학부, 대학원 간 정원 상호조정 포함), 위치 변경(캠퍼스), 통·폐합, 교사·교지 임차 등의 경우에 '운영 기준'을 적용

	'설립·운영기준' 현행 규정	'운영기준' 개정(안)																				
교지	<table border="1"> <tr> <td>정원</td> <td>400명 이하</td> <td>400명 ~ 1,000명</td> <td>1,000명 이상</td> </tr> <tr> <td>면적</td> <td>교사건축면적이상</td> <td>교사기준면적이상</td> <td>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td> </tr> </table>	정원	400명 이하	400명 ~ 1,000명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건축면적이상	교사기준면적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p>건축관계법령의 건폐율·용적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출한 면적</p>												
정원	400명 이하	400명 ~ 1,000명	1,000명 이상																			
면적	교사건축면적이상	교사기준면적이상	교사기준면적의 2배 이상																			
교사	<p><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p> <table border="1"> <tr> <td>인문·사회</td> <td>자연과학</td> <td>공학</td> <td>예체능</td> <td>의학</td> </tr> <tr> <td>12m²</td> <td>17m²</td> <td>20m²</td> <td>19m²</td> <td>20m²</td> </tr> </table>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12m ²	17m ²	20m ²	19m ²	20m ²	<p><학생 1인당 교사기준면적></p> <table border="1"> <tr> <td>인문·사회</td> <td>자연과학</td> <td>공학</td> <td>예체능</td> <td>의학</td> </tr> <tr> <td>12m²</td> <td colspan="4">14m²</td> </tr> </table>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12m ²	14m ²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12m ²	17m ²	20m ²	19m ²	20m ²																		
인문·사회	자연과학	공학	예체능	의학																		
12m ²	14m ²																					
소유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교지는 설립주체 소유가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사확보율 100% 이상인 경우, 교사·교지의 임차를 허용 																				
산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교사·교지·교원 확보 기준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입생 미충원 대학의 경우 재학생 기준을 적용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은 확보 필요교원의 1/5을 겸임·초빙교원으로 활용 가능 ※ (현행) 대학원대학(전문대학원) 1/3, 전문대 1/2, 일반대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대학도 1/3까지 겸임·초빙교원으로 활용 가능 																				
수익용 기본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만큼 확보 필요 * 등록금·수강료 수입 외에도 학교의 임대료 수입, 고정자산처분수익 등이 포함 ※ 국가출연법인이 운영하는 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수익 총액의 2.8%를 학교에 지원 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 만큼 확보 필요 *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비해 약 20% 감소(22년 평균) '연간 등록금·수강료 수입의 2.8%를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 																				
위치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및 신규 캠퍼스 모두교지 확보율 100% 충족 기존 및 신규 캠퍼스 모두교사 확보율 100%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캠퍼스의 시설·여건을 갖추면 일부 학과의 캠퍼스 이전 가능 																				
통·폐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대-대학 / 산업대-대학이 '대학'으로 통·폐합 시, 전문대 정원의 60%이상 감축(단 3년제는 40%이상 4년제는 20%이상 감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제완성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건에 맞춰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으로 이렇게 달라집니다

		현장 사례	개선 후 변화
4 대 요 건	교사 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대학은 입학 정원의 감소 등으로 현행 기준 만큼 넓은 규모의 교사·교지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음 	⇒ 교사·교사 기준이 완화되어 늘어난 유휴 교사·교사 를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
	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B대학은 최신 트렌드 및 기술에 대한 교육을 위해 현장 전문가 채용 확대를 희망 	⇒ 현장전문가를 겸임·초빙교원으로 확대 채용하여 다양한 강좌개설 수요 충족 및 현장 적합도 높은 인력 양성 가능
	수익용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C학교법인은 C대학에 매년 4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고 있으나, 수익용 기본재산이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 총액에 미치지 못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낮게 평가되고 있는 상황 	⇒ 법인이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 총액의 일정비율 이상 대학에 투자 하면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 하여 법인의 대학에 대한 재정 기여 를 유도
그 외 의 개 선	임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D대학은 최근 교원 확충에 따라 교수 연구실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야 하나, 교사·교지는 설립 주체 소유가 원칙이므로 임차할 수 없는 상황 	⇒ 대학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교육·연구 여건 을 보다 용이하게 개선 가능
	위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E대학은 쾌적한 교육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학과를 타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했으나, 기존 캠퍼스의 교지확보율이 100%를 충족하지 못해 이전하지 못하고 있음 	⇒ 기존 캠퍼스의 교지확보율과 무관 하게 타 지방의 신규 캠퍼스로 이전 가능
	통 폐 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F학교법인은 산하의 대학을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가고 싶지만 통폐합 시 정원 감축 의무가 있어 쉽게 통폐합 결정을 하지 못함 	⇒ 정원 의무 감축 부담이 완화 되어 학교법인의 운영 여건과 의지 등에 따라 자발적인 통·폐합 활성화

☑ 2024학년도 대학 정원 조정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설립·폐지 시 전년도 또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이상의 교원 확보율 유지 필요 	<p>⇒ 교원확보율 유지 요건을 삭제하여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는 학과의 설립·폐지 등 정원 조정 자율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대는 정원 조정 시 교육부의 사전승인 필요 	<p>⇒ 정원 조정 자율 시행 후 교육부에 사후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정원 순증을 위해서는 4대 교육요건 모두 충족 필요 	<p>⇒ 첨단분야는 4대 요건 중 교원 확보 요건만 충족하면 정원 순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분야는 결손인원·편입학 여석을 활용하여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는 특례 부여 	<p>⇒ 지방대의 경우, 非첨단분야도 결손인원·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학과 신·증설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전문대학원의 박사과정 설치 시 교원 연구실적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사회 4편, 예체능 3편, 자연·공학·의학 6편 	<p>⇒ 대학이 학칙으로 자율 결정</p>

1 [전문]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

- (개념)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대교협·전문대교협)이 대학의 신청을 받아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인증
- (경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08년)하여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11년부터 기관평가인증 1주기 시작
 ※ 기관평가인증 주기 : 1주기('11.~'15.), 2주기('16.~'20.), 3주기('21.~'25.)
- (법적 근거) 「고등교육법」상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인정기관은 대학 평가·인증이 가능하며, 정부는 그 결과를 행·재정적 지원에 활용 가능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②**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학교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하거나 인증할 수 있다.
 ④ 정부가 대학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평가 또는 인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 (판정유형)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와 불인증, 인증취소 및 정지가 있으며 인증유예·불인증·인증취소·인증정지는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

[기관평가인증 유형별 대학 수('22.11월 기준)]

구분	인증	조건부	인증유예	불인증	인증취소	인증정지	미신청	총계
일반대	147	4	5	2	-	8	19	185
전문대	117	5	1	4	3	-	3	133

2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

- (개념) 사학진흥재단이 사립대학 결산서 상 재무지표를 활용 분석하여 운영 손실, 부채비율 등 재정진단을 통해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영위기대학* 지정
 * 사학진흥재단 시뮬레이션 결과 '20년도 결산기준 22개, '21년도 결산기준 30개 추정
- (법적 근거)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에 의해 사학진흥재단에서 사학기관의 경영개선을 위한 재정진단 등 실시 가능

- 경영진단부터 구조개선과 퇴로마련에 이르는 사항을 규정하는 법 제정 추진('22.9.30,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발의)

◆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6.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